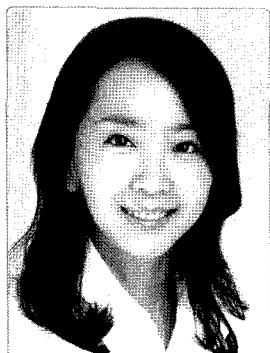


# 어린이 그림책 <달샤벳>, 걸그룹 이름으로 도용되다?

어린이 동화책 ‘달샤벳’ 가 걸그룹 ‘달샤벳’?  
상표 출원 시 상품·서비스업 지정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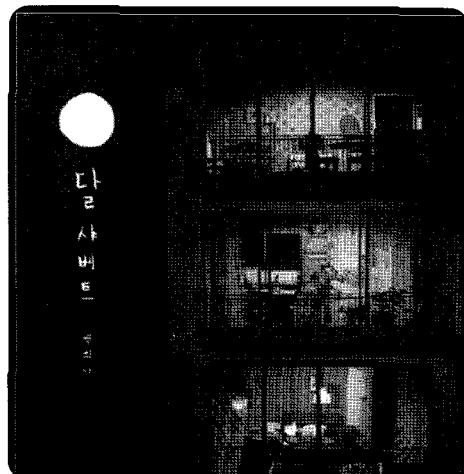


전 소 정

知心 IP&Company 상표팀 변리사

“**오** 죽하면 책 한 권 만들면서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 출원 신청까지 했겠습니까?”

베스트셀러 어린이 그림책 <구름빵>의 작가 백희나(40)씨는 최근 신작 <어제 저녁>(스토리보울 발행)을 출간하면서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신청부터 해야 했다. 그것도 뮤지컬, 애니메이션, 문구, 인형 등 ‘어제 저녁’이라는 제목이 상표로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분야에 걸쳐서 말이다. 작품에 나오는 인형 11가지를 전면, 측면, 후면 등 수십 장 사진을 찍어 디자인 등록도 출원 신청했다. 여기에 든 돈만 400만 원이 넘었다. 백씨가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한 연예기획사가 작년 8월 자신이 출간한 전작 <달샤벳>의 이름을 도용해 ‘달샤벳’(Dalshabet)이라는 이름의 걸그룹을 데뷔시켰기 때문이다. “아이들을 위해 만든 제 작품이 걸그룹의 이름으로 온통 인터넷을 도배하는 것을 보면서, 죽어라 만들어 시궁창에 넣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달샤벳>은 백씨가 1년 동안 안면마비까지 앓으며 만든 작품으로, 출간 이후 5개월 만에 3만 5,000부나 나가는 등 어



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백씨는 법적 대응도 알아봤지만 <달샤베트>가 상표등록이 돼 있지 않아 해당 기획사에 사용을 중지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백씨는 “뮤지컬, 빵, 공연 등 달샤베트라는 이름이 상표로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제품에 상표등록 출원신청을 일단 해놓았지만, 실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등록까지는 1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애만 태우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을 통해 백씨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기획사 측은 한 달에 100만 원을 지급하고, 2집부터 그룹명 앞에 ‘the’를 붙이겠다는 조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그전만 해도 “제목은 저작권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었다. 그러나 백씨는 후배들을 위해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이를 거절했다. 백씨가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 당했던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7년 전 출간한 <구름빵>은 40만 권이나 팔렸지만, 백씨가 이 책을 통해 지금까지 올린 수입은 850만 원이 전부다. 무명의 신인작가 시절, 출판사는 원고료만 지급하는 조건으로 책을 출판한다는 계약서에서 명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책이 아무리 많이 팔려도 인세는 단 한 푼도 못 받는 셈이다. 또 책과 관련한 모든 지식재산권을 출판사에 넘겨줘야 했기 때문에, <구름빵>을 소재로 한 뮤지컬, 애니메이션, 빵 등에 대해서도 아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다. 백씨는 “작가에게 창작물을 빼앗는 건 죽으라는 말과 같다”며 “아무리 작은 책이라도 저작권이 보호되고, 신인작가들도 당당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sup>1)</sup>

<달샤베트>는 이제 갓 5살이 된 우리 아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책이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밤, 아파트에 사는 동물 친구들이 너무 더워 잠도 못 이루고 있는데 그 아파트의 반장 늑대 할머니가 달물이 똑똑 떨어지는 걸 보고 좋은 생각을 해냈다. 바로 달물을 받아서 달샤베트를 만들고, 만든 달샤베트를 아파트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할머니가 만든 달샤베트를 먹은 동물 친구들은 그제서야

깊은 잠에 빠졌지만, 달이 녹아 없어져 달에서 살 수 없게 된 달토끼들이 반장 할머니를 찾아온다. 달토끼들을 가엾게 여긴 반장 할머니가 남은 달물을 화분에 부으니 달처럼 환하고 커다란 달맞이꽃이 피었다. 커다란 달맞이꽃은 밤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잠시 후 새까만 밤하늘에 작은 빛이 피어나더니 그 빛은 점점 자라나 둥근 보름달이 되었다. 그리고 달토끼들은 이제 새로 살 집이 생겼다고 춤을 추며 달로 돌아갔다는 내용의 독창적이고 사랑스러운 이야기이다. 이 기사를 접하면서 한 아이의 엄마로서, 지식재산 전문가로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입장에 섰을 때에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개인과 중소기업을 더 많이 대리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더 깊이 느끼고 고민하게 된다. 개인이나 중소기업들이 예전보다는 지식재산권의 필요성을 조금은 느끼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여, 지식재산권을 미리미리 확보하지 않아 많은 피해를 입는 것을 목격한다.

개인이나 중소기업에게는 지식재산권 확보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는 있겠지만, 사업이 성공했을 경우 갑작스런 역풍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투자가 바로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확보라 감히 말할 수 있겠다.

상표 출원의 경우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기준인 니스국제상품분류 중 필요한 상품분류를 지정하여 출원하게 되어 있는데 상품분류란 상품의 성질, 용도 등에 따라 상품 및 서비스업을 1류부터 45류로 분류해 놓은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작가 백희나 씨의 경우 <달샤베트>를 상표출원하려고 할 때, 현재 <달샤베트>를 제호로 사용하고 있는 동화책, 그림책이 속하는 제16류를 지정하여야 하고, 애니메이션으로 출시될 가능성도 있는 바 애니메이션이나 웹으로 만든 만화가 속하는 제9류도 함께 지정하여야 하며, 완구류로 제작될 경우도 대비하여 완구류가 속하는 제28류도 함께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엔터테인먼트 사

번호	건번이미지	출원(국제등록)번호 출원(국제등록일자)	광고번호 광고일자	등록번호 등록일자	유산권주체번호 유산권주체일자	상태상품분류	도형코드	출원인
1	달샤벳	4020100064351 (2010.12.15)	402011008215 (2011.11.08)			공고 16		백희나
2	달샤벳	4020100064353 (2010.12.15)	402011008217 (2011.11.08)			공고 30		백희나
3	달샤벳	4020100064352 (2010.12.15)	402011008216 (2011.11.08)			공고 28		백희나
4	달샤벳	4020100064349 (2010.12.15)				출원 09		백희나
5	●	7020110076358 (2010.11.05)	7020110076359 (2011.10.21)			공고 26.09 25	010701 030108 0703	백희나
6	●	4020100038343 (2010.07.26)	4020110034601 (2011.05.25)	4020090495000 (2011.05.14)		등록 16.30 25	010701 030108 0703	백희나
7	●	4120110028325 (2010.11.05)	4120110073034 (2011.10.04)			공고 41.43 25	010701 030108 0703	백희나

(2011.11.20 현재 '백희나' 씨 '달샤벳' 출원 현황-키피리스 검색 화면 캡처)

업에 응용될 가능성까지 염두하자면 그 업종이 속하는 제 41류까지 지정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만 지정한다고 하면 모두 4개류를 함께 지정하게 되는 것이다.

상표 출원을 위한 대리인(변리사) 비용이나 특허청에 납부해야 하는 관납료는 모두 지정한 상품 분류의 개수를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출원 시 상품분류 1류당 20~30만 원 정도가 소요되므로, 백희나 씨의 경우 앞서 살펴본 필수적인 4개류 정도를 지정한다면 1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달샤벳> 같은 동화책이나 만화, 애니메이션의 경우에는 위낙 사업 확장 가능 영역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캐릭터 중 하나인 뽀로로의 경우에는 의약품, 식품류에까지 모두 상표등록을 완료한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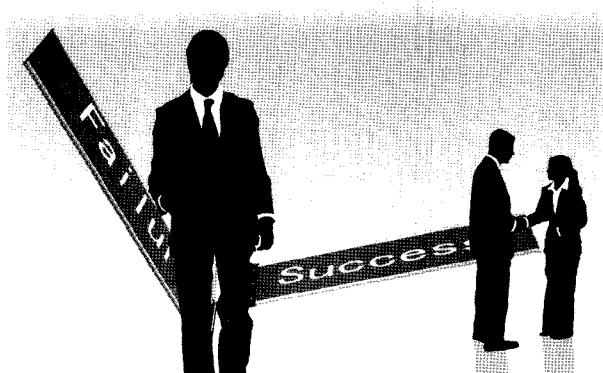
하지만,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처음부터 상당한 비용을 치르고 여러 개 상품분류에 상표 등

록을 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지금까지 처음 만화,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분들과 상표 상담을 해본 경험을 비추어 보았을 때 상표 등록이 필요하다는 것은 느끼지만, 상표 등록에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상표권 확보를 소홀히 하는 것을 많이 보았다.

그러나, 어떠한 방식으로든 자신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상품이나 업종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법적 울타리는 쳐놓고 사업을 시작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무실을 임대하고 사무용품을 구매하는 것만큼이나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다.

상표 출원 비용 때문에 부담을 갖는 개인이나 중소기업을 위한 실제적인 팁을 하나 소개하겠다.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각 지역의 지식재산센터에서 상표, 디자인, 특히 출원 비용을 80% 지원해 주는 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원제도는 매년 3월 정도에 시작되며, 1년 예산이 정해져 있으므로 선착순으로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다.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소정의 구비서류만 갖추면 대리인 비용과 특허청 관납료에 드는 초기 비용을 80% 까지 지원해 주고 있으므로 각 지역지식재산센터의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업 공고를 잘 체크해 두기 바란다.

2011. 12 |



1) 2011.1.13 인터넷한국일보 기사 발췌